

충청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

충청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성대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3년 7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7월 5일

3. 제안이유

- 도내 등록된 야영장에 대해 도 차원의 육성 대책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이루고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야영대회 개최, 우수야영장 평가·지정, 야영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 야영장 정보제공, 사무의 위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9조)
- 야영장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검토의견

가. 제정 필요성

-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활동 증가 및 삶에 대한 가치기준의 변화로 해외여행과 더불어 야영 및 캠핑, 오토캠핑, 차박 등의 형태의 야외활동이 활성화 되는 추세이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족단위 여가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야영장 및 캠핑장에 대한 이용이 확대되고 있음.
- 전국의 주요 야영장 및 캠핑장은 방문객들의 평가에 따라 다양한 홍보 효과로 지역의 우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기에 충청북도에 등록된 야영(캠핑)장에 대한 운영 현황을 제대로 조사하여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도내 야영(캠핑)장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한 우수한 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되도록 하는 근거 마련으로 해당 조례 필요함.
- 도내 등록된 야영장은 총 247개소로 일반야영장업이 203개소, 자동차야영업장이 44개소이다. 도내 시·군별로 보면 제천시 전체 야영(캠핑)장 중 30.8%인 76개소, 충주시가 15.8%인 39개소, 괴산군이 15.4%인 38개소가 등록되어 있는 등 3개 시·군이 62.0%를 차지하고 있음(표-1참조).

[표-1] 충청북도 야영(캠핑)장 등록 현황

(2023.06.30.기준)

지자체	합계	비율(%)	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영동군	12	4.9	11	1
옥천군	5	2.0	4	1
괴산군	38	15.4	37	1
진천군	10	4.0	7	3
음성군	5	2.0	3	2
증평군	1	0.4	0	1
단양군	29	11.7	19	10
충주시	39	15.8	27	12
제천시	76	30.8	68	8
청주시	17	6.9	14	3
보은군	15	6.1	13	2
합계	247	100.0	203	44

○ 각 시·군에 소재하는 야영(캠핑)장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조례가 괴산군, 제천시, 충주시, 청주시 이외에는 없어(표-2 참조) 야영(캠핑)장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도내 등록된 247개소의 야영(캠핑)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질적으로 우수한 야영(캠핑)장으로 육성하고, 우수한 야영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객 유인 역할을 위해 통합조례가 필요함.

[표-2] 충북 기초자치단체 야영(캠핑)장 조례 제정 현황

(2023.06.30.기준)

지자체	구분	조례명	제정일
영동군		×	
옥천군		×	
괴산군	육성·지원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6.09.
	운영·관리	괴산군 화양동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2019.06.28.
진천군		×	
음성군		×	
증평군		×	
단양군		×	
충주시	운영·관리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2022.05.06.
제천시	운영·관리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2015.08.13.
청주시	운영·관리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2018.02.23.
보은군		×	

-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야영(캠핑)장이 많이 개설된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충청남도는 우수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도내 야영(캠핑)장을 육성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표-3 참조).

[표-3] 광역자치단체 야영(캠핑)장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023.06.30.기준)

연번	지자체	조례	제정일
1	경기도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0.13.
2	전라남도	전라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06.29.
3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03.12.
4	충청남도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4.30.
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2018.12.10.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야영(캠핑)장 육성 및 지원이 아닌 시가 조성한 캠핑장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운영에 중점을 둔 조례임

나. 주요 내용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충청북도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문화 정착 기여에 그 목적이 있음을 명시함.
-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야영(캠핑)”, “야영객”, “야영장”, “야영장업”의 용어를 정의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함.
- ‘안 제3조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과 안전대책, 교육, 홍보 등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 제공 노력과 관리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5년마다 수립하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의 근거와 내용을 규정하고, 해당 계획수립 시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5조’ 도지사는 시·군과 협의하여 야영(캠핑)문화 확산을 위해 야영대회를 개최와 예산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위해 국제 규모의 야영(캠핑)대회 유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함.
- ‘안 제6조’는 도내 등록된 야영장을 평가, 평가위원 위촉,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에 대한 우수야영장 지정과 지원 및 자격 미달 야영장에 대한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야영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는 도내 야영장에 대한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하도록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야영장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활용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9조’는 제5조(야영대회 개최), 제7조(야영 교육), 제8조(야영장 정보 제공)에 대한 사항 추진을 위해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안 제10조’는 도지사가 매년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점검에서 안전기준 미달 또는 그 밖의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제정 조례안은 도내 등록된 야영장에 대해 도 차원의 육성 대책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이루고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도내 야영장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우수야영장 지정을 통한 질적 제고로 도내 야외활동(야영, 캠핑, 카라반 등)관련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조례안 제6조 우수야영장 평가·지정, 제10조 안전점검 실시와 관련하여 형식에 그친 조례의 적용과 운영이 아닌 도내 우수한 야영(캠핑)장의 육성을 위해 형평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붙임: 충청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끝.